

초등학교 때부터 선행학습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입니다. 과잉 입시경쟁은 학년을 앞당겨 배우는 선행학습을 더욱 부추깁니다. 여름방학을 앞둔 요즘, 학원마다 앞 다퉈 선행학습을 권장합니다. 아 니, 강요에 더 가깝습니다. 선행학습을 시키는 것이 이미 상식처럼 굳어진 학원가에서는 누가 더 먼저 시작하느냐가 중요할 뿐, 학생의 동기와 의지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사라질 수 있다” “빠르면 빠른수록 좋다” 등 으름장을 놓는 학원 앞에 학부모들은 속수무책입니다. 학부모들의 불안이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시키자니 비용 부담이 크고, 남들 다 하는데 안 하자니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학부모 입장도 이해합니다. 유치원부터 학원에 다니고, 초등학교 때는 과외를 받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밤늦게까지 학원을 전전해야 해야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한국이 유아교육에 드는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습니다. 연 20조 원을 넘는 과도한 사교육비는 과잉이 부른 낭비입니다. 오늘도 애만 학생들만 시달리고, 학습 부담만 늘고 있습니다.

선행학습 도움 될까?

선행학습 Q&A

여름방학을 앞둔 학원가에서 선행학습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학원 들은 허술한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해 선행학습을 부추깁니다. 학원가에서는 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선행 학습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도 일상 습니다. ‘내 아이가 뒤처지면 어쩌나’ 하는 학 부모의 불안한 심리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고등학생들도 어려워 하는 미적분을 초등학생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을 리 만무합니다. 선행학습은 사교육비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범일 뿐입니다.

▶ 선행학습 금지법, 사교육은 예외?

“지난 2014년 9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선행학습 금지법’의 원래 명칭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사교육비 증가와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줄인다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선행 학습의 주범인 사교육 시장은 여전히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선행학습 광고 금지 위반, 처벌 규정 없어

“선행학습 금지법에는 학원의 선행교육을 직접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선행학습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8조 4항은 학원·교습소, 개인과 교습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 규정이 없으니 선행학습 광고는 교육청의 점검 때 슬그머니 사라지고, 점검이 끝나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단속 권한이 있는 교육청은 무자격 강사 채용이나 교습비 변경 미등록 등 다른 위반사항을 적발해 벌점을 매깁니다. 행정지도위반 벌점은 30점으로, 31점부터 최대 1년까지 영업을 정지됩니다.”

▶ 자유학기제, 선행학습으로 변질?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2학년 중 한 학기는 시험을 보지 않고, 진로 탐색에 도움 되는 직업 체험 교육을 받는 제도입니다. 지난해부터 전면 시행됐지만, 학원가에서 사실상 자유롭게 학원을 다닐 수 있는 학기로 변질됐습니다. 학원들은 심화·특수수업 등 이름만 바꾼 선행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라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학원가에 자유학기제는 선행학습을 위한 기간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 선행학습 효과 있다

“학원의 실명대로 선행학습이 효과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효과가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단순한 지식전달과 암기, 문제 풀이만 하는 선행학습은 스스로 공부할 수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합니다. 또 높은 난이도의 문제를 풀지 못했을 경우, 자존감도 낮아집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스스로 대한 자책과 불만이 커지면서 성격장애나 돌발 행동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중학교 때 시작, 늦어”... 처벌 규정 미비도 ‘한몫’

선행학습의 민낯

선행학습 조장 광고해도 마땅한 처벌 규정 無 “입시제도 변화에 재수생 보다 재학생에 집중”

서울 잠실에 사는 주부 최모(45)씨는 최근 초등학교 4학년 딸의 학부모 총회에 나갔다 고민에 빠졌다. 총회에 참석한 학부모들로부터 방과 후 영어·수학 선행학습 전문학원에 보내라는 말을 들은 것이다.

특히 이미 중학교 1·2학년 수준의 선행학습을 시작한 지 꽤 됐다는 말까지 들었다. 평소 자녀 교육은 공교육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던 최씨는 혹시 내 아이만 뒤처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다.

최씨는 “굳이 막대한 돈을 들여 애를 고생시키는 것 같아 그동안 학원에 보내지 않았다”며 “남들 다 시키는데 내 아이만 뒤처질 것 같아 불안해서 어쩔 수 없이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근 여름 방학을 앞두고 학원가에서는 선행학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학원 건물마다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현수막이 나부끼고, 온라인에서도 과장 광고를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다.

현행법상 선행학습 광고는 불법이지만, 관련 법안이 미비한 탓에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3년 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규제법)’ 제정으로 단속 근거는 마련됐지만, 이를 제재할 조항과 처벌 규정이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사교육 조장 부당 광고 학원 173곳 적발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학원 광고는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에 따르면 올해 1·2월 서울(대치동·중계동·목동·잠실)과 경기, 광주, 부산 등 총 13개 지역에서 총 149건의 선행교육 광고를 적발했다. 지역별로 서울 대치동이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광주시 남구 봉선동 23건 ▲서울 목동 14건 ▲부산 좌동 13건 순이었다.

지난 5월에는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을 조장하는 부당 광고를 게시한 학원과 교습소 173곳을 적발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와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결과 사교육을 조장하는 부당 광고를 한 서울 시내 학원 173곳에 대해 특별단속(4월10일~5월11일)을 벌여 강남·서초 지역 57개 학원 등 79개 학원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 사교육 조장 광고를 중지·철거토록 행정처분 했다.

단속 결과에 따르면 송파구 A수 학교교습소는 교습소가 신고자 외에 추가로 강사를 둘 수 없음에도 2회에 걸쳐 무단으로 강사를 채용했다. 또 교육청에 신고한 시설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등 위법 운영 정도가 심해 교습 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교습비 변경 미등록, 강사 채용 및 해임 미신고, 강사 계시표 미게시, 성범죄 경력 미조회, 부당 교재비 징수 등의 위법 행위가 발견된 강남구 B학원엔 교습정지 7일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350만원이

부과됐다. 이외에 교육청은 28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선 위법 운영 정도에 따라 벌점(각 10~30점)과 과태료(각 30만~650만원)총 5320만 원의를 부과했다. 위법 운영 정도가 가벼운 나머지 48개 학원 및 교습소는 5~25점까지 벌점만 받는다.

관련 조례와 규칙 등에 따르면 벌점 31점부터는 교습정지, 66점 이상은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다. 위법운영이 개선되지 않을 때도 교습정지, 등록말소가 가능하다.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자유학기제 정착과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학원 등 지도 특별 대책’을 수립하고 분기마다 1회 이상 사교육 조장 광고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처벌은 법률로 규정하거나 법률에서 교육청에 위임하지 않으면 조례로 정할 수 없다”면서도 “교육부가 사교육 조장 광고를 한 학원들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교육청에 행정지도를 지시한 만큼 교육부에서도 (사교육 조장 광고의 심각성을) 충분히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미마땅한 처벌 규정 없어

사교육비를 가중하는 선행학습이 왜 기승을 부릴까.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관련 법규가 미비하다. 지난 2014년 ‘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선행학습규제법’이 시행됐다. 초·중·고교에서 교육과정보사 앞선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으로 출제하지 못한다.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는 선행학습을 근절시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특별법 적용대상에는 사교육이 제외되면서 입법 취지를 무색해지고 있다. 공교육 내 선행 학습만 금지된 탓에 수요자들이 사교육으로 대거 몰렸기 때문이다. 특히 특별법에는 학원·교습소



또는 개인과의 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해서 안 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할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학원들은 선행학습 처벌 규정 미비와 학부모들의 불안한 심리를 교묘히 이용해 선행학습을 부추기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입시학원 원장은 “입시제도 변화에 따라 재수생보다 재학생에 집중하는 추세로 사교육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며 “재학생 위주다보니 교육 프로그램도 선행학습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교육 시장도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것과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당초 선행학습규제법 취지에 맞지 않게 학원에서 버젓이 선행학습을 하고 있고,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제라도 학원에서도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법안을 강화하고, 처벌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문화 도시 광주는 지금 행복한 독서 중!

Engaging Classrooms, Joyful Schools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

빛고을 독서마라톤

제12회

2017. 4. 7 (금) - 11. 7 (화)

대상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광주 시민

구간 거북이 / 악어 / 토끼 / 타조 / 사자 / 호랑이 / 월계관

신청 <http://bookmarathon.gen.go.kr/>

주최 광주광역시교육청

주관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